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0.7.8.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1. 자격기준	1
2. 모집인원	2
3. 전형일정	3
4. 지원 및 전형방법	4
5.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사항	5
6.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지원자격	5
7. 제출서류	7
8. 전형료	10
9. 유의사항	10

[대학 소정양식]

□ 입학원서	11
--------------	----

1. 자격기준

□ 법령상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재외국민
- 나. 외국인
- 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법령상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세부 지원 자격

모집인원	법령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이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항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외국인은 모집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순수외국인 신입학 및 외국인 편입학 전형”으로 지원하여야 함

2. 모집인원

캠퍼스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강릉 캠 퍼 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	입학정원 제한없이 모 집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사학과		
	사회과학 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학과		
		자치행정학과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명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환경조경학과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예술체육 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체육학과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패션디자인학과				
보건복지 대학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학과			
과학기술 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합 계			5	입학정원 없음

※ 치위생학과, 치의예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3.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20. 7. 20.(월) ~ 7. 24.(금), 18:00까지	방문접수만 실시함 ※ 접수장소 :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과(대학본부 109호)
자격심사	2020. 8. 27.(목)까지	입학과
합격자발표	2020. 9. 4.(금) 17:00 이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http://www.gwnu.ac.kr) ※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합격자등록	2020. 12. 28.(월) ~ 12. 30.(수), 16:00까지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시스템
합격자 등록금납부	2021. 2. 8.(월) ~ 2. 10.(수), 16:00	본교 홈페이지에서 납입금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로 납부

4. 지원 및 전형방법

□ 지원절차

- 입학원서 접수(지원자) → 입학전형(대학) → 합격자 발표(대학) → 등록(지원자)
 - ※ 등록금 환불: 본교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포기를 원할 때에는 타 대학 합격 통지서를 제시하고 본교에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환불함
 - ※ 2020년 제70회 토픽(TOPIK)에 응시한 수험생은 2020.8.21.(금) 18:00시까지 성적표를 담당자 이메일(drnever@gwnu.ac.kr)로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자격심사에서 제외됨
 - ※ 코로나19로 인하여 응시자가 현지 사정에 의해 서류발급·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선 접수가 가능하며 추가서류는 2020.8.21.(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자격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방법

- 지원자는 제1지망만 할 수 있음
- 복수지원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였을 경우 1개 대학만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함

□ 전형방법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정
-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적격자 중 외국의 재학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

법령구분	인원구분	서류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재외국민	입학정원 2%이내	10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 제7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100%

5.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23학기, 11년 6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 G3-1 중 한 개 학기만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G4-2로 ~ G5-1 중 한 개 학기만 대체 가능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 발급서류 중 아포티스유 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모 및 학생 출입국관련서류, 해외근무자 재직관련서류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 입학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입학취소 됨

6.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2% 이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 분	비고	해외 재학, 근무, 거주, 체류기간 (단위: 년)						
		학 생		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자녀	재직증명서 제출시 지원 가능							
해외근무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가 해외근무자의 국가에서 함께 거주하고 체류일수 충족시 가능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3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3	학생 재학 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자영업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해외파견 교직원							
	해외선교활동 (재단은 가능하나 자발적 선교는 불가)				-		-	
해외유학연수자	재직증명서 제출시 지원 가능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 분	내 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4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구 분	비고	해외 재학, 근무, 거주, 체류기간 (단위: 년)						
		학 생		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재외국민	학생이 외국에서 이수	12	-	-	-	-	-	-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12	-	-	-	-	-	-
결혼이주민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12	-	-	-	-	-	-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별도설명)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되거나 중복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어학능력

- 입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또는 본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 졸업: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7. 제출서류

- 한국어,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서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에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지원자격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재외국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서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대체서류 가능함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3. 영주권 사본(부모, 해당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학력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 신청 위임장 6. 신분증 사본 7. 한국어 능력 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 재학증명서 4. 초,중,고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사실증명발급 신청 위임장 7. 신분증 사본 8. 전가족 호적등본 9.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10.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1부 11. 재정보증서류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 이상 중국은행 등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1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18,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12. 한국어 능력 증명서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2.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3. 초,중,고 재학증명서 4. 초,중,고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사실증명발급 신청 위임장 7. 신분증 사본 8. 한국어 능력 증명서 9. 귀화증명서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2020년 제70회 토픽(TOPIK)에 응시한 지원자는 접수증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발급방법: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 관련기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상담전화 02-2100-7500,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현황 (2019년 5월 14일 현재,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름)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핀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8. 전형료: 전 계열전형료 없음

9. 유의사항

- 지원자의 국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입학 학기 개시 전 하나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음 (학기 초 호적등본을 다시 제출 받아, 학기 개시 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는 입학할 수 없음)
- 본교에서는 신체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자는 유의하기 바람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본교 입학과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공고 미확인 및 입학원서의 연락처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관련: 본 입시관련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 수집항목: 이름(보호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및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보호자 포함), 이메일, 환불계좌 등
 - 수집 및 이용 목적: 입학전형, 장학생 선발, 학사업무, 통계, 학생생활관 선발 관련
 -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 (2020.02.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과로 문의 (☎ 033-640-2924 FAX 033-640-2079)

